

영국의 소위 「신데렐라법」 논란과 아동학대 관련 법제

I. 들어가는 글

지난 2012년, 클리오 국제 광고제의 은상 수상작은 중국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알리는 짧은 영상(제목: There are children who play to be invisible)이었다.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 아동기금) 중국위원회는 아동폭력과 경제적 빈곤으로 신음하는 약 150만 명의 중국 어린이들의 실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영상 광고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비단 중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예: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전쟁, 기아 혹은 다른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국제연합에서도 2006년, 사무총장(Kofi A. Annan) 명의로 아동폭력보고서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작성하였고,¹⁾

유니세프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의회 및 의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여 왔다.²⁾ 이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아동보호 법률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아동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비정부단체인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38분에 한 꼴로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도 매월 한 건 이상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141명 - 이라고 한다. 아동대상 폭력 발생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파악되고 있다(2012년도 6,403건). 특히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특별법 제정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이 문제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은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³⁾ 국내에서는 아직도 아동폭력 문제가 가정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거나 가정 및 학교교육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1) 136개국의 정부와 비국가기구(NGO), UN인권고등판무관실,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 관련단체, 기업, 관련 연구자,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참여하여 완성된 보고서이다.
- 2) 유니세프 &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아동폭력 실태와 국회의 역할: IPU-UNICEF 국회의원 지침서, (서울: 국회사무처 국제국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7).
- 3)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

이러한 한국에 비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아동폭력 문제에 보다 일찍부터 법률제정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여 왔다. 영국은 이미 19세기에 빈민구제 개정법(Poor Law Amendment Act 1868)에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 제공을 명시했고, 이 조항은 1933년에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서의 아동폭력은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제재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처벌을 넘어선 정신적 학대까지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영국 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었고, 현재(2014년 8월)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소위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적 장치로 볼 수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과 처벌기준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법안 통과를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을 듯하다. 다만, 본 글에서는 새로운 아동보호법 논의가 나온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 후, 개정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영국 내 반대론자들의 의견 역시 검토해 보고, 이 법이 한국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려 한다.

II. 도입 배경

소위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새 아동보호 법률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아동 및 청소년 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이하 아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 법안이다. 1933년에 제정된 영국의 아청법 제1조 1항(Section 1(1))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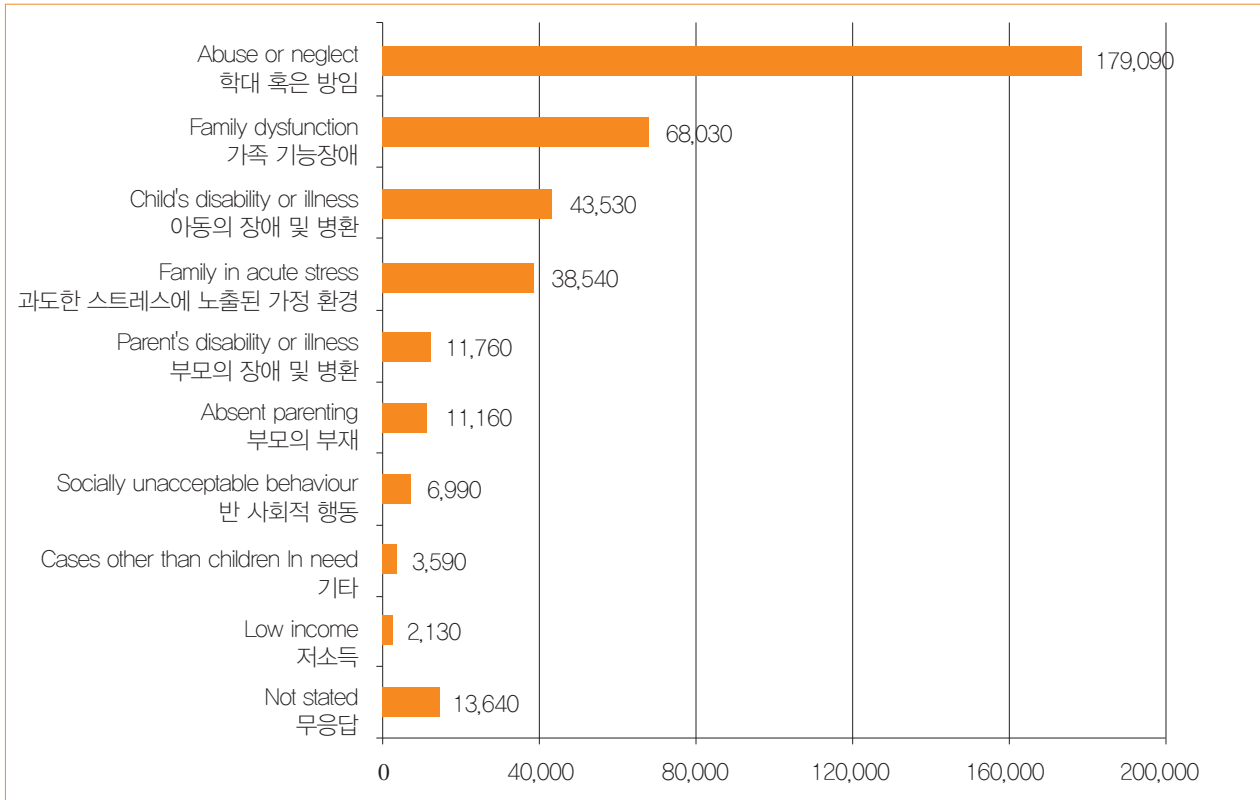
16세 혹은 그 이상인 자가 그 미만의 연령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폭행(wilful assaults), 학대(ill-treats), 방임(neglects), 유기(abandons)를 하여 이들에게 건강상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당하도록 할 경우에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되며, 상해의 범주에는 시력, 청력, 완력(腕力), 내장기관의(organ of the body)에 대한 상처(injury)나 기능상실(loss) 그리고 정신장애(mental derangement)를 포함한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이미 80년 전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하여 왔다.⁴⁾ 그러나 영국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근절된 것이 아니다.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학대(abuse)와 방임(neglect)이 영국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수치 또한 다른 지

4) 처벌에 관한 항목은 동법 Section 1(1)(a~b)에 명시되어 있다.

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표 1〉 기초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숫자와 원인(2012.1.~2013.3.)^{5)*}



* 위의 표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 아일랜드의 사례를 제외한 잉글랜드만을 조사한 수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의 비율(11.7%)보다 방임(neglect)되거나 정서적인 학대(emotional abuse)를 당하는 경우가 각각 41.0%와 31.7%로 훨씬 높은 점이다.⁶⁾ 즉, 영국 교육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

동에 대한 물리적 체벌에 비해 방치 및 정서적 학대가 아동 교육 및 성장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자 심각한 아동복지 관련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소위 신데렐라법은 약 150만의 영국 아동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⁷⁾는 사회적

5) Department for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in England, 2012-13," Statistical First Release, SFR45/2013 (2013년 10월 31일), 6쪽.

6) 위의 글, 8쪽.

7) Christopher Hope, "Parents who deliberately starve children of love face jail under new Cinderella Law," Telegraph, (2014년 3월 30일).

인 배경 속에서 입안된 것으로, 자유민주당의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와 보수당의 로버트 벅크랜드(Robert Buckland)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전직 대법관인 엘리자베스 버틀러-슬로스 남작(Baroness Elizabeth Butler-Sloss)를 위시한 사회 지도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한 시민단체 - 아이들을 위한 행동: Action for Children -가 기존의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에 대한 방치 및 정서적인 학대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 캠페인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곧 영국 내에서 공론화되었다.

2012년 4월, ‘아이들을 위한 행동’은 ‘어린이에게 지속적인 안전(정식명칭: Keeping Children Safe: The case for reforming the law on child neglect)’을 슬로건으로 삼아 기존의 아청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요 논거는 1933년 제정된 아청법 제1조는 정신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므로 적절한 법의 개정을 통해 위의 행위를 한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guardians)를 구속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⁸⁾ 이듬해인

2013년에도 이 단체는 보고서 - 형법과 아동 방임: 자율적인 분석과 법 개정을 위한 제안 (The Criminal Law and Child Neglect: an independent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 을 발간해, 보다 구체적으로 아청법 제1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 보고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아동에 대한 비신체적(non-physical)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제안하였다.⁹⁾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첫 반응은 냉담했다. 주 담당 부처인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아청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쪽이었다. 이미 2010년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었다.¹⁰⁾ 또한 아청법에 명시된 정신장애(mental derangement)는 정서적 학대를 해석될 수 있는 명문이라고도 판단했다.¹¹⁾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다양한 범주의 아동 학대에 법률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률 개정 자체에는 부정적이었다.¹²⁾ 하지만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아청법 개정을 위

8) Action for Children, Keeping Children Safe: The case for reforming the law on child neglect, (2012년 4월), 19쪽.

9) Jacqueline Beard, "Calls for reform of the criminal law on child neglect," Research Briefing, Standard notes SN06372 (2014년 8월 4일): 4-5쪽.

10)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DCSF),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Government 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London: DCSF, 2010) 38-39쪽: 참고로 DCSF는 2010년 총선 이후 Department for Education로 개편되었다.

11) Beard, "Calls for reform of the criminal law on child neglect," 5쪽.

12) 위의 글, 6쪽.

해 서명을 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¹³⁾ 교육부와 법무부도 결국 기존의 법률이 아동들의 정서적인 학대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동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영국의 아동법이 제정된 지 80년이 지나 용어나 적용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 역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된다. 무엇보다 아동법 제1조의 아동학대의 정의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학대의 기준과 비교할 때 내용면에서 부족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¹⁴⁾

2013년 10월 법무부장관 대미안 그린(Damian Green)은 아동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2014년 3월에는 언론을 통해 새 아동법 개정안이 다음 총선 전에 도입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년 6월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Queen's Speech를 통해 개정된 법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과 정신적 상처(psychological harm)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 법안의 지지자들을 고무시켰다. 2014년 6월 현재,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 정확한 명칭은 '아동학대 법안 2013-2014: Child Maltreatment Bill 2013-14(이하 아

동학대 법안)' - 하원에서 1차 검토(First Reading)를 마쳤다.

III. 주요 내용

1933년에 제정된 아동법은 그 동안 8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세부적인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¹⁵⁾, 그 주요 근간 - 아동 학대의 정의(Section 1(1)) - 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영국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 소위 신데렐라법(아동학대 법안)은 시민단체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제안한 법령 거의 그대로를 반영해 기존의 아동법 제1조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만 본 개정안은 제1조의 개정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수정된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다.

제1조의 1항(Section 1(1))의 아동 학대에 대한 행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6세 이상인 자로서 한 아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행위나 태만(omission)을 이유로 의도적(intentionally)으로나 무모하게(recklessly) 그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maltreatment)하여 실질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significant harm)

13) 법률 개정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의 명단 및 내용은 '아이들을 위한 행동'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actionforchildren.org.uk>.

14) WHO는 아동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범주에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dignity)에 대해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태만 등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하다.

15) 예를 들어 벌금의 금액은 물가의 상승률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를 입히게 될 경우에는 유죄에 처한다.

처벌 규정인 Section 1(1)(a)는 수정된 사항이 없지만, Section 1(1)(b)에는 기존의 벌금이 400 파운드(한화 약 75만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개정된 법안에는 3,500파운드(한화 약 600만원)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새로 개정된 법안의 주목할 점은 또 있다. 기존의 제2조에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즉,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지원 및 주거지(lodging)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사례로서 보호자의 음주 혹은 부주의 등을 이유로 세 살 이하의 유아 수면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유죄로 규정하였다(아청법 1933 Section 1(2)(a-b)). 하지만 개정된 법안의 2항(Section 1(2))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대신에 1항에서 기존의 용어를 대체한 새 용어를 법률적으로 해설했다: 1조 2항(Section 1(1))에서 대체된 용어는 주요 용어는 상해(harm), 고의적으로(recklessly) 및 학대(maltreatment)이다.

상해(harm)는 기존의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을 대체한 용어로서, 이 법안에서의 상해의 정의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서, 물리적, 지능적, 감정적, 사회적 혹은 행동발달에 있어서의 장애를 모두 포함한

다(Section 1(2)(a-b)). 이 법안은 이어 기존 아청법의 고의적으로(wilfully)와 학대(ill-treatment)대신 의도적(recklessly)와 심각한 학대(maltreat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개정된 전자(recklessly)가 이 법안 속에서 갖는 의미는 한 아동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자가 자신의 행위나 태만을 이유로 아이가 심각한 상해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안에서의 심각한 학대의 범주에는 아이에 대한 방임(방치를 포함),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착취(exploitation) 및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를 포함한다. 즉, WHO에서 규정한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켰다.

일견 유사해 보이는 이 용어들이 개정된 이유는 신데렐라법 개정을 주도한 시민단체 ‘아이들을 위한 행동’의 보고서 – 형법과 아동방임 – 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wilfully이라는 단어는 현대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며, 의미 또한 때로는 불분명하여 법 집행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음식의 제공, 관리 및 안전한 환경 등과 관한 아이의 방임 문제에 관련하여 wilfully는 해석상 곤란한 면이 존재하는 용어이다.¹⁷⁾ 따라서 이 단체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recklessly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16) Action for Children, The Criminal Law and Child Neglect: an independent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Glasgow: Action for Children, 2013), 11-12쪽.

17) 위의 글, 11쪽.

로 본 보고서에서는 해석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wilfully가 고의적으로라는 의미와 함께 완고한(stubborn)의 뜻도 내포하고 있어 보호자의 양육방침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여 법률 집행에 있어 모호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학대를 규정하는 용어인 ill-treatment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 ‘아이들을 위한 행동’은 인식하고 있다. 우선 이 용어는 영국의 관련 재판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maltreatment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자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용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통용되어 왔다. 아울러 maltreatment가 대체용어로 사용된 이유로서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 (Children Act 1989)의 제31조 9항(Section 31(9))에서 명시된 ill-treatment와는 별도의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⁸⁾

한편, 마지막 수정 항목으로서 제1조 3항(Section 1(3))은 아동의 상해 및 잠재적인 상해의 기준을 동년배 아이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영국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영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관할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maltreatment)의 범주와 각각의 정의를 사례보다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행정집행의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국에서 준 법률적 기능을 갖고 있다.¹⁹⁾

1. 물리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학대는 때리기, 흔들기, 집어던지기, 약물제공(poisoning), 태우거나(burning) 그을리게(scalding), 질식시키기(suffocating)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부모 혹은 보호자(carer)가 아이의 질병을 조작하거나 고의적(deliberately)으로 발병되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말한다. 아이들이 그들 자신을 무가치, 사랑받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하거나, 다른 제3자(another person)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역시 이 범주

18) 위의 글, 12쪽.

19) DCSF,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Government 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38-39쪽.

에 포함된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을 박탈한다든지, 억압적으로 조용히 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놀리는 것(making fun)’ 역시 정서적 학대이다. 아이들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시키거나, 아이들의 학습과 탐구에 행위에 과잉보호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통상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도 이 학대의 한 종류이다. 타인에 의해 학대받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도 정서적 학대이며, 가상 및 현실 공간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놀라고 불안해하며, 부당하게 이용당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이다.

3.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학대는 어린이나 미성년자(young person)에게 성적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로서, 높은 수위의 폭력이나 그 대상자가 이 행위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성적 학대에는 강간과 구강성교와 같이 삽입(penetration)이 동반된 물리적으로 강제성을 띤 성적 접촉과, 그 외 자위, 키스, 더듬기, 옷 위로 만지기 등과 같은 행위(non-penetrative acts)들도 포함한다. 성적 학대의 범주로서 비접촉적인 성적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성적 학대이다. 즉,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이미지(sexual images)를 노출 시키거나 만들어내는 것, 성적 행위를 보게 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 인

터넷 등을 이용하여 학대할 아동을 찾는 행위 역시 위의 범주에 들어간다. 성적 학대는 성인 남성에게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인 여성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자행할 수 있는 대상이다.

4. 방임(Neglect)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필수요소(needs)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아이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임신 중 어머니의 약물 복용(substance abuse)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아이가 출생한 이후의 방임은 아래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 i) 부모 혹은 보호자가 적절한 음식, 의복 및 주거를 제공하지 못할 때
- ii)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상해 혹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 iii) 적절한 지도(supervision)를 보장하지 못할 때
- iv)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방임에는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정적인 요구(emotional needs)에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IV. 논란 및 합의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보수당의 로버트 벅크랜드는 만약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사악한 신데렐라의 계모와 같은 부모는 처벌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위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법안은 다음의 몇 가지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존의 아동법은 제정된 지 약 80년이 지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모호하거나 오래된 용어를 현실에 맞는 법률 용어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법률은 담당 부처인 교육부의 아동학대 가이드라인을 법률적으로 지지해 주는 토대가 되어,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캠페인이 영국 내에서 진행되는 동안 영국 사회가 부모의 역할과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캠페인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제적 침체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²⁰⁾ 본 법은 아동의 권리를 안전을 위한 적절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자의 의견 역시 존재하여 본 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아직 불

투명하다.

우선, 새 법안 제1조 2항(Section 1(2)(e)에서 규정된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비판의 중심에 있다. 옥스포드 브룩스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조안 베일리(Joanne Bailey)는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의 기준은 시대와 시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조지왕 시대(1714-1830) 아버지들이 오늘날 비해 자녀에게 입맞춤에 인색했다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방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국 베일리 교수는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미지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to jail parents for emotional neglect... is anything but uncharted territory).²¹⁾

켄트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프랭크 푸레디(Frank Furedi)는 더욱 신랄하게 신데렐라법을 비판하였다. 그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장문 기고를 통해 이 법은 장차 영국 “가정의 일상적인 정서적 영역(emotional landscape)을 위험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²²⁾ 그는 그의 글 첫 머리에 잠재적으로 법률위반이 될 수도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들며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이 자신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20) Jamie Doward, “Child neglect cases reported to NSPCC rise 30% in a year,” The Guardian, (2012년 6월 10일).

21) Joanne Bailey, Modern day “Cinderella law’ has roots in Georegian Britain” The Conversation, (2014년 4월 2일).

22) Frank Furedi, “The Cinderella Law: Emotional correctness gone mad,” The Independent, (2014년 4월 2일).

것도 반대론자들이 볼 때는 아동 학대이며, 자녀들에게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푸레디 교수는 현재 교육부에서 규정한 아동 학대의 사례들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정서적 학대의 한 범주로 아이들의 말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놀리는 것(making fun)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놀라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과 탐구에 있어 부모의 개입을 과잉보호(over-protection)와 제한(limiting)이라는 명목으로 제재하는 것 역시 이상하다. 따라서 극성 엄마(tiger mother)나 질투심이 많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부모는 모두 잠재적으로 아동 학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판단 주체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이 법안의 도입은 부모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파 사회학자인 푸레디 교수는 그의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어김없이 드러냈고, 다음과 같이 이 법안의 지지자들을 비꼬며 글을 마무리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정서적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 둔감하다는 것 때문에,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부모의 잔혹한 행위(toxin

behaviour)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자칭 어린이 보호론자들은 선의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행위는 긍정적이라기보다 훨씬 해로울 뿐이다(far more harm than good). 공권력에 의한 가정내의 정서적 생활에 대한 감시는 결국 부모의 권위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역사상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의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발달로부터 기인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어린이들 그리고 나아가 부모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²³⁾ 정리하자면, 푸레디 교수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가정사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신데렐라법 도입을 둘러싼 영국의 여론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공권력의 개입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를 아직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이유이다. 하지만 신데렐라법은 현재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굿네이버스의 자료를 통해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동대상 물리적 폭력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현상은 영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왔다.

23) 위의 글 참조.

〈표 2〉 국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2005-2013* (%)

연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포함)	중복 학대	계
2005	9.1	11.1	4.4	38.5	36.9	100
2006	8.4	11.6	4.8	40.6	34.9	100
2007	8.5	10.6	4.8	38.7	37.4	100
2008	7.6	12.2	5.1	41.1	34.0	100
2009	5.9	13.7	4.8	36.1	39.4	100
2010	6.1	13.7	4.6	33.3	42.3	100
2011	7.7	15.0	3.7	30.3	43.3	100
2012	7.2	14.6	4.3	26.8	47.1	100
2013	11.1	16.2	3.6	26.2	43.0	100

출처: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²⁴⁾

* 2012년 이전에는 유기를 방임과 구별하여 따로 집계하였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현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학대보다 방임(26.2%) 및 정서적 학대(16.2%)이다. 하지만 기존의 아동법으로도 방임(neglect)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방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물론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되어 있고(아동복지법 제2조), 이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의무를 지닌 자들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빈약하고, 방임을 범죄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국내의 아동방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9월 중 처리될 예정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효용성이 의문시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²⁵⁾

영국의 신데렐라법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는 법안 자체보다는 법안이 의회에 제안되는 과정 중 영국 정치인 및 시민단체가 보여준 아동학대 문제 전반에 관한 국민적 여론 조성 및 문제제기이다. 신체적 및 성폭력만큼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서적 학대와 방치되고 있다는 일반 대중과 사회의 인식전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V. 닫는 글

본 법은 영국의 아동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가정 내 부모의 권위 약화와 부모 자식 간 정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

24) 박수지, “아동학대 중 방임이 1위 - 예방 관심 없는 사회,” 한겨레, (2014년 8월 1일).

25) “쓰레기 집안에 시신과 아이 방치...학대 아니라는 法,” 연합뉴스, (2014년 8월 7일).

가 있다. 비판론자들의 의견처럼 신데렐라법이 영국의 가정 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신데렐라법이 양날의 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본 법안은 적어도 영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방임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노력의 결과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방임을 “부모 및 양육자(caregivers)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동의 건강, 교육, 정서적 발달, 음식, 주거지 및 안전한 생활환경 등을 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⁶⁾ 이를 통해 볼 때, 신데렐라법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아동방문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서 적극적으로 명문화하여 자국 아동 및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영국인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7월 29일 포천에서 8세의 아이가 2구의

주검과 함께 발견되었을 때,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그 사안의 특수성은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지만, 이 당시 함께 발견된 아이에 대한 방임문제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졌고, 법률적으로도 피의자인 어머니는 살인사건 혐의만 받았을 뿐,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한국의 아동학대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현재 영국 의회에서 검토 중인 신데렐라법이 비록 법리상 허점이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문제와 아동보호 체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조 의 행

(영국 켄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26) Etienne G. Grug and Linda L. Dahberg et al, “Child abuse and neglect by parerents and other coaregiver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Chapter 3, (Geneva: WHO, 2002), 60쪽.

참고문헌

-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 http://cpc.give.gni.kr/campaign/campaign_view.asp?idx=477&issu=-Y&gclid=CjwKEAajwgYKfBRDvgJeylem9xDUSJACjeQ7AK6ROQ6mPCsrRMvqPjWtCIB-cu7O9mWRLy7oRY8U0jRoCcsPw_wcB (접속 2014년 8월 2일).
- 박수지, “아동학대 중 방임이 1위 - 예방 관심없는 사회,” 한겨레, (2014년 8월 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49472.html> (2014년 8월 5일 접속).
- 연합뉴스, “쓰레기 집안에 시신과 아이 방치...학대 아니라는 法,” (2014년 8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7/0200000000AKR20140807141400060.HTML?input=1179m> (2014년 8월 7일 접속).
- 유니세프 & 국제의회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아동폭력 실태와 국회의 역할: IPU-UNICEF 국회의원 지침서, (서울: 국회사무처 국제국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7).
- Action for Children, The Criminal Law and Child Neglect: an independent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Glasgow: Action for Children, 2013): http://www.actionforchildren.org.uk/media/5178586/criminal_law_and_child_neglect.pdf (2014년 7월 10일 접속).
- Action for Children, Keeping Children Safe: The case for reforming the law on child neglect, (2012년 4월): http://www.actionforchildren.org.uk/media/3771553/action_for_children_keeping_children_safe_the_case_for_reforming_the_law_on_child_neglect.pdf (2014년 7월 20일 접속).
- Bailey, Joanne, Modern day “Cinderella law’ has roots in Georgian Britain” The Conversation, (2014년 4월 2일): <http://theconversation.com/modern-day-cinderella-law-has-roots-in-georgian-britain-25057> (2014년 8월 4일 접속).
- Beard, Jacqueline, “Calls for reform of the criminal law on child neglect,” Research Briefing, Standard notes SN06372 (2014년 8월 4일): <http://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research/briefing-papers/SN06372/calls-for-reform-of-the-criminal-law-on-child-neglect> (2014년 7월 20일 접속).
- Child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and Other Caregivers,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global_campaign/en/chap3.pdf (2014년 8월 6일 접속).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DCSF),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Government 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London: DCSF, 2010):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30401151715/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standard/publicationdetail/page1/dcsf-00305-2010> (2014년 7월 31일 접속) 참고로 DCSF는 2010년 총선 이후 Department for Education로 개편되었다.
- Department for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in England, 2012-13” Statistical First Release, SFR45/2013 (2013년 10월 31일):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4084/SFR45-2013_Text.pdf (2014년 7월 20일 접속).
- Doward, Jamie, “Child neglect cases reported to NSPCC rise 30% in a year,” the Guardian, (2012년 6월 10일):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2/jun/10/nspcc-child-abuse-rises-sharply>(접속 2014년 8월 1일).
- Furedi, Frank, “The Cinderella Law: Emotional correctness gone mad,” the Independent, (2014년 4월 2일):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health-and-families/features/the-cinderella-law-emotional-correctness-gone-mad-9231233.html#> (2014년 8월 4일 접속).
- Grug, Etienne G. and Dahberg, Linda L., et al, “Child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and other coaregiver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Chapter 3, (Geneva: WHO, 2002).
- Hope, Christopher, “Parents who deliberately starve children of love face jail under new Cinderella Law,” Telegraph, (2014년 3월 30일): http://www.telegraph.co.uk/health/children_shealth/10732982/Parents-who-starve-children-of-love-face-jail.html (2014년 7월 10일).
- Radford, Lorraine, and Susana, Corral, et 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K today, (Lond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2013).